

포괄근담보

근저당권설정계약서

채권자 겸 근저당권자	성명	友邦캐피탈 株式會社 代表理事 尹世致	
	주소	서울特別市 鐘路區 내수동 167	
채무자	성명	株式會社 開城金屬 代表理事 金秀京	
	주소	京畿道 坡州市 法院邑 法院里 495-12	
근저당권 설정자	성명	金 秀 京	
	주소	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8-1 잠미아파 트 2동 206호	

2013년 10월 7일

위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

근저당권 설정자(이하 "설정자"라 한다)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기본거래약정을 승인하고, 이 계약서 끝부분 "근저당물건 목록"란에 기재한 물건(이하 "근저당 물건"이라 한다)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

1. 피담보채무의 범위

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.

설정자는 그 가운데 포괄근담보 에서 정한 채무(이자, 지연배상금, 부대채무를 포함한다)를 담보하기로 한다.

중간 부분 생략

포괄근담보

채무자가 채권자(본·지점)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
가. 어음대출, 증서대출, 당좌대출, 어음할인, 지급보증, 매출채권거래, 상호부
금급부, 사채인수, 유가증권대여,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
모든 채무
나.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(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
우 제외)
다.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'가'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
라.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'가'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
의 채무, 전부금 채무, 추심금 채무

2. 채권최고액

금 壹什伍億(일십오억) 원

3. 근저당권 결산기

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
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설정자는

장래지정형

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.

중간 부분 생략

장래지정형

정하지 아니한다.

이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
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,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 24:00로 한다.

중간 부분 생략

제11조 특약사항

위 외에 특별한 약정 사항은 없으며, 분쟁이 생길 경우 민법 및 일반 법리에 따른다.

근저당물건목록

대 상 목 적 물 의 표 시	순 위
1.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15-1 공장용지 5,124 평방미터 2. 위 지상 시멘트 부록조 스테트즘 단층 공장 1,164.73평방미터	1번

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, 등기필증 사본을 수령함.

2013년 10월 15일

설정자 : 김수경



주민등록번호 500125-2047235

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함	근저당권 설정자	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8-1 장미아파트 2동 206호 김수경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